

칸트

1. 의무론

a. 도덕 = 법칙 준수 and 동기 = 도덕적

≠자연적 경향성 ↔ 의무의식, 선의지. why? 일정한 판단 필요

b. 형식주의 윤리 - 무조건적 명령의 형태 중시

정언명령 ↔ 가언명령

┌인간성 목적 대우 법칙 ↔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됨

└보편화 법칙 = 내로남불X. “네 의지의 규칙이 보편적 원칙이 되도록 행하라.”

순수이성: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인 선천적 판단·인식 능력

실천이성: 도덕적 법칙을 구성하는 이성/인식 능력

도덕 법칙 형성 - 도덕률. 1. 형식: 정언 명령

↓

2. 내용: 보편적 / 당위적

도덕법칙

1) 보편화 정식 - “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2) 인간성 목적대우 정식 -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선의지 : 결과에 상관없이 그것이 옳기 때문에 무조건 실현하려는 의지 → 의무론적 윤리

#칸트 의무론의 특징

1) 의무에 의한 도덕적 행위의 중요성 강조 (동기주의 윤리) ↔ 결과주의(공리주의)

2) 행위 자체의 도덕성 강조. (행위주의 윤리)

3) 언제나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함.=절대/보편적 윤리법칙 존재(보편주의)

4) 인간만이 자율적 도덕 실천의 주체

##칸트 의무론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의무적인 행위의 원칙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도덕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고,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도덕 법칙은 지켜서 행복하기 때문이 아닌, 지켜야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

###선의지란?

옳은 행위를 실행하고자 하는 선한 의지.

선의지에 의한 행동만이 선한 행동

우연히 옳은 행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선한 행동은 아님.(동기가 없기 때문)

자연적 경향성(감정, 욕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단지 옳기 때문에 그 행위를 선택하는 의지를 의미.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 모두에게 내재된 것이며, 가르칠 필요는 없으며 단지 일깨우기만 하면 된다.

####정언명령(무조건, ~하라) *가언 명령(조건부, ~하려면 ~하라.)

제1 보편화 준칙

제2 인간성 목적대우 준칙

칸트 1단원 기출 선지

[생윤 2018학년도 6평]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야 할 것(제2 인간성 목적대우 정식)

[윤사 2015학년도 6평]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하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사람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라면 도덕적 행위로 인정한다.

[생윤 2020학년도 9평]

의무에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행위는 그 자체로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동기주의 윤리의 내용. 즉 의무 의식과 선의지에 근거한 행위만이 옳은 행위이다.

⑤ 자신의 감정(=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정언 명령의 형식을 따르는)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해야 합니다.

[생윤 2021학년도 6평]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법칙이다. 이것은 도덕적 강요의 법칙이며, 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 그리고 의무에 대한 외경에 의해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의무에 대한 외경도 감정이긴 하나, 이는 자연적 경향성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다.

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행위 이전에 이성 자체에 의해 산출된 감정이기 때문이다.

즉 법칙에 대한 외경, 존경심은 감정이지만 자연적 경향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향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무론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 감정, 욕구가 아닌 도덕 법칙을 존중하려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생윤 2021학년도 9평]

① 선한 성품에서 나온 행위...

- 칸트는 성품이 선할 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함.

②, ③, ④: 인간 개개인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의 수립자이며,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게 구속력이 있다.

[생윤 2022학년도 6평]

어떤 행위가 의무에 맞을지라도 반드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그 행위가 의무가 명령한 것에 맞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의무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 의무로부터 일어난 행위와, 의무에 맞는 행위의 구분.

⑤ 경향성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도덕적 동기(=선의지)에 따라 행동하세요.

[생윤 2022학년도 9평]

이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의 행위는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 법칙에 자신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복종시킬 때 그 행위는 결과와 상관없이(=동기주의)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생윤 2023학년도 6평]

너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바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보편화가 불가능한 준칙은 옳지 않다.

[생윤 2024학년도 9평]

도덕성은 행위가 의지의 자율과 맺는 관계이다.=스스로 정한 도덕 법칙(보편화가능한)에 의한 행동은 옳다.
의지의 준칙이 자율성의 법칙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는 단적으로 선한 의지가 된다.

[생윤 2025학년도 수능]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해야 할, 더 이상의 의도가 없는 선의지라는 개념은 이미 자연적인 건전한 지성에
내재해 있고, 가르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계발될 필요만 있는 것이다.

= 인간에게 선의지는 태생적으로 내재되어 있음.

2. 생명과 윤리

1. 자살에 대한 칸트의 관점

자살= 자신의 목숨을 수단화(정언 명령 제 2 법칙에 위배).

2. 성, 사랑에 대한 칸트의 관점=보수주의

칸트는 성행위를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본다.

성행위는 인격적 사랑을 동반할 수는 있지만, 성적 욕구 자체가 도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

따라서 칸트는, 성적 활동을 서로의 성적 기관을 수단으로 취급하라고 비판한다.

칸트에게 성행위는 '신체의 양도'를 포함하므로, '목적으로 대우하는 동시에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음.

타인의 인격 자체를 자신의 성적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사물적 인격권**

성적 행위는 타인의 신체를 향유하는 것이므로, 인격적 존중이 아닌 쾌락의 수단으로 삼는 것.

그러나 '결혼'한 부부관계가 성립된다면, 성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

기출 선지

[2022학년도 9평]

결혼은 서로에게 평등한 권리를 허용하고, 자신의 전인격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양도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일겠다는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다. 그리하여 각자는 상대방의 전인격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갖게 되며, 이제 인간성을 추락시키지도 않고 도덕성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성관계가 가능한 방식이 이성을 통해 명확해진다.

① 자발적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이므로 비인격적 행위에 해당되며, 따라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② 결혼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상대방의 성을 향유할 수 있다.

③ 인격적 만남을 통한 성관계일지라도 부부 사이가 아니라면 정당화될 수 없다.

3. 형벌에 대한 칸트의 입장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도덕적 선

사형제 찬성.

1. 사형은 범죄자가 범죄를 의욕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
형벌을 의욕할 수는 없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형벌이 아님.
≠범죄자 처벌에 동의하는 것이 아님.
2. 동해보복 : 살인자(교사범, 공범)→사형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같은 생명인 살인범의 목숨 뿐이므로 사형만이 응당한 처벌이다.
3. 사형은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임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실현(책임 기회를 주는 것)
자유롭게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범죄에 대한 대가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범죄자의 수단화를 방지. 범죄 예방을 위한 것이 아님.

인격주의

1. 사형은 살인자의 인격을 파괴할 가혹행위에서 벗어나게 함.
살인자 내면의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음.=인간 존엄성 실현
2. 범죄 예방 수단으로서의 형벌은 옳지 않음. 오로지 공적 정의(동등성의 원리)의 실현만이 근거.
3. 범죄를 의욕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가능.(사회적 이익 X, 동의 X)
처벌의 조건
1원칙 - 유죄의 조건. 범죄 사실 자체가 형벌의 근거.
2원칙 - 비례의 조건.
4. 살인을 했기에(공적 정의를 저해했기에) 시민적 인격성이 박탈되나,
생득적 인격성은 박탈되지 않고, 생득적 인격은 존중의 대상

응보주의(=보복주의)

1. 형벌은 응분에 동등한 보복이어야 함.
보복=정의 실현의 수단, 처벌은 이성의 명령.
2. 동등성의 원리(동해보복):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3. 이성에 따른 사회계약 조건 설정과 예지계 존재 간 사회계약을 근거로서 인정함.
계약은 이성을 지닌 예지적 존재가 동의할 내용.
즉 칸트에게 있어서 형벌은, 물리적 해악의 성격을 지니나, 그것이 도덕적 악은 아님.
도덕 법칙의 특수한 용례인 '형법'에 의해 행해지기에, 그 결과적 해악과 무관하게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

계약론적 성격

계약의 주체 : 예지계 인격(선험적인, 경험할 수 없는 선의지와 같은 보편적인 이념의 세계)

계약의 내용 : 형벌, 입법, 사형의 권리(≠자신의 생명권 처분)

형벌의 대상 : 현상계 인격(경험 가능한 현실세계)

즉 형벌권은 예지계에서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현상계 인격인 범죄자와 시민은 형벌권의 집행, 입법 등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음.

기출/EBS 심화 제시문

1. 시민 사회가 그 구성원의 만장일치의 합의에 의해 해체된다고 할지라도 그 전에 그때까지 감옥에 남아 있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살인자에 대한 처형은 집행되어야만 한다.
 - ㄱ. 사형수는 사형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형에 처해진다.
 - ㄴ. 형벌은 범죄자의 자유의지(=도덕선택능력)를 스스로에게 실현시켜주는 것이다.
 - ㄷ. 사형은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 않는 공적 정의의 형식이다.
 - ㄹ. 사형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적 보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죄형법정주의)
 - ㅁ. 범죄와 형벌은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 ㅂ. 칸트는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억제력을 가져야 함을 간과하지 않으나, 그러한 목적으로 형벌이 이루어진다면 범죄자의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목적으로 형벌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ㅅ. 칸트는 형벌이 사회적 선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ㅇ. 칸트는 형벌이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2. 보복법을 따르는 형벌의 권한은 공적 이성에서 있다. 그러함에도 형벌 받기를 의욕하는 범죄자의 계약을 그 권한의 기초로 삼는 것은 범죄자 자신을 재판관이 되게 하는 것이므로 법의 왜곡이다.
 - ㄱ. 법은 실천 이성이 외적으로 법칙을 수리배 개인을 강제하는 권리의 상정이다.
 - ㄴ. 형벌을 집행하고자 할 때 범죄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 ㄷ.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의욕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다.
 - ㄹ. 형벌은 범죄자가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를 보호해준다.
 - ㅁ. 살인을 명령한 사람도 사형 집행의 대상이다.
 - ㅂ.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해 부과해야 한다.
3. 형벌은 범죄자나 시민 사회의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 ㄱ. 사형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집행되어야 한다.
 - ㄴ. 형벌에는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성을 적용할 수 없다.
4. 사형 제도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존치되어야 한다.
5. 형벌은 보복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6.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범죄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행해지는 공적 보복 행위.
7. 사형은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출 선지

[2014학년도 6평]

형사적 처벌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의 형태와 정도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야 하지요.

[2014학년도 수능]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가해져야 한다.
그 누구도 결코타인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2015학년도 9평]

범죄자도 형벌을 받아 생이 끝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형벌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범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경중은 행위의 경중에 따라야 한다.

ㄱ. 범죄 예방과 억제가 사형 제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15학년도 수능]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평등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ㄴ.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이다.

ㄷ.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부합한다.

[2016학년도 수능]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언 명령이자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선형적으로 근거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2017학년도 6평]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줍니다.

[2017학년도 9평]

형벌은 단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부과되어야 한다. 인간의 생득적 인간성은 그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죄수, 사형수) 선고로 받아도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ㄹ.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은 범죄자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

[2017학년도 수능]

모든 인간은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가혹 행위로부터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2018학년도 수능]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 해체될 경우라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법권의 이념으로서의 정의가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 의욕하는 것입니다. 공적 정의 앞에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입니다.

④ 살인범을 사형하지 않는 것은 공적으로 정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 되려 살인범의 인격이 훼손될 행위로부터 지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

[2019학년도 9평]

형벌은 위법 행위의 경중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기에, 살인범은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이것은 정의가 도덕 법칙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A.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줄지언정 정당하다.

[2019학년도 수능]

누구든 그가 처벌받아야 할 행동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다. 아무리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도 삶과 죽음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다.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2020학년도 6평]

범법자에 대한 처벌은 정언명령으로 주어진다. 사법적 처벌은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든 시민 사회를 위해서든 다른 어떤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될 수 없다.

1.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 실시해야 한다.

[2020학년도 9평]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으로, 사형수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길이다.

[2020학년도 수능]

인간은 내적 자유를 가진 존재이며 자신의 인간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네가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네 자신에게 가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형벌에서의 정언명령이다.

ㄹ. 인도적 동정심(=자연적 경향성)에서 사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르다.

[2021학년도 6평]

형벌은 범죄자나 시민 사회의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자세히 제시할 수 있다.

=형벌은 공적 정의를 위한 것.

[2021학년도 9평]

누구나 형벌받을 행위를 의욕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그 이유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이다. 범죄자와의 계약을 근거로 사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2021학년도 수능]★★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하며, 결코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다.

**형벌이 예외적으로 국가 존립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살인범의 수가 너무 많아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 경우,

주권자는 이러한 비상 사태에 대해서는 스스로 재판관의 역할을 맡아 유배형 등의 다른 형벌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면’이므로, 어디까지나 예외에 속함.

[2022학년도 6평]

법은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다.

[2022학년도 9평]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이다.

또한 사형은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준다.

[2022학년도 수능]

살인을 했거나, 그것에 가담한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살인의 경우 공적 정의의 앞에서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2023학년도 9평]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 사형은 살인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이다. 이는 정의가 선형적으로 정초된 보편적인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1. 살인자는 살인을 의욕하여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하나, 생득적 인격성은 상실하지 않기에 우리는 그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사형을 가한다.

★★[2023학년도 수능]★★

입법권은 국민의 합일된 의지에만 귀속한다. 보편적으로 합일된 의지만이 법칙수립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칸트의 계약론을 가리키는 지문.

★★[2024년도 6평]★★

자연 상태에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형법을 요청한다.=칸트의 계약론.

살인과 달리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을 추악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

5.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2024학년도 9평]

사회 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ㄷ.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 아니다.

- 형벌의 집행은 선의지가 있는 예지계로부터 파생된, 보편적이고 선형적인 정언 명령이다.

그러므로, 정언 명령은 선의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리고 형벌은 정언 명령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형벌은 악이 될 수 없다.

[2025학년도 6평]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2025학년도 9평]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다.

ㄷ. 범죄 억제력이 있는 형벌도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 죄를 의욕함 이외의 이유에서 처해진다.

ㄹ. 형벌은 범죄자의 인격 교화가 목적이 아니다.

[2025학년도 수능]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와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히 제시한다.

[2026학년도 6평]

형벌의 목적은 정의 실현에 있다. 공적인 정의는 동등성의 원리를 기준으로 하며,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4. 평화와 공존의 윤리 - 영구평화론

영구평화론 - 이상주의의 모태.(계약론적 성격)/항구적 평화체계

자연 상태(전쟁 상태) = 전쟁 중이거나 전쟁 발발의 가능성이 있어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
전쟁의 종식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영구 평화를 위한 계약 필요. → 영구 평화론

영구 평화론의 조항 (예비 조항→확정조항의 순서)

예비 조항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맺은 평화 조약은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증여, 매매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 타국 내정에 폭력적 간섭 불가.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즉시 폐지를 의미하지 않음)
≠ 모든 무력의 폐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1) 방어 전쟁 = 주권이 침해당할 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전쟁 허용.
2) 자발적 군사 훈련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한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확정 조항

1. 국내법: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체여야 한다.
2. 국제법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 세계(평화) 연맹의 결성.
1) 주권을 가진 국가가 가입.
2) 세계정부, 단일국 아님.
3) 주권은 독립적이며, 이들은 동료적 관계.
3. 세계시민법: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 모든 사람은 어떤 이방인이 적대적으로 처신하지 않는 한 그를 환대해야 한다. 이는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권리이며, 이를 통해 인류는 세계 시민적 체제에 점차 가까워질 수 있다.

평화 조약의 체결만으로는 영구평화가 보장되지 않고, 평화 연맹을 결성해야만 영구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
개인의 도덕성 규칙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함.

기출/EBS 심화 제시문

1. 국가간 현실적 적대 행위의 제거만으로 영구 평화는 보장되지 않는다.
2. 치안 등의 이유로 경찰이나 자발적 군사 훈련 등의 무력은 포기하지 않아도 영구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3. 국제 연맹은 주권적 권력이 아닌 동료관계를 향유할 뿐이다.
4. 상비군은 그 자체로 공격적 전쟁의 유발 요인이다.
5. 박애주의적 관점에서 이방인에 대한 환대가 필요하다.
6. 상비군의 고용은 인간을 도구로 간주하는 행위이다.
7. 국제법은 이성의 명령에 바탕을 둔 보편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8. 법률은 영恆한 평화를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9. 자유로운 국가는 하나의 도덕적 인격처럼 대우받아야 한다.
10. 국제법은 이성을 따른 보편 원칙에 근거한다.

기출 선지

[2014학년도 6평]

확정 조항 1~3항

4. 전쟁 방지를 위해 국제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국가들이 평화 연맹을 결성해 국제법을 실행해야 한다.

[2016학년도 9평]

세계 평화는 받는 것이 아니라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란 모든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그 앞에 '영원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용어의 중복일 따름이다.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이다.

[2016학년도 수능]

사회 계약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가 건립되듯이, 국제관계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을 통해 평화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이 상태에서만 국민의 모든 권리나 국가들의 소유가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맹의 이념은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하며, 영원한 평화로의 지속적인 접근은 인간 및 국가의 의무로서, 그리고 권리에 기초한 과제로서 성립될 수 있다.

[2018학년도 6평]

전쟁이 끝난 후 잠시 평화가 찾아와도 국가들은 더욱 강화된 무장과 적대 정책을 세운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 국가 간의 항구적인 평화 조약(=영구평화를)이 요구된다.

[2019학년도 6평]

전쟁의 완전 종식과 영구 평화는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의무입니다.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전쟁 수단의 금지와 국가 간 연맹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2. 국제법을 통해 국가 간 우호와 시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

[2019학년도 9평]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대해폭력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이다. 한 국가에 대한 폭력적 개입은 결국 모든 국가의 자율성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5. 전쟁은 국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2019학년도 수능]

도덕의 주체인 인간은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할 수 없으며,

국가도 한 인격체로서 타국의 한낱 수단이 될 수 없다. = 국가를 인격체로 취급한다.

- 개인의 도덕성 규칙을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함.

[2020학년도 6평]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국가들이 연합하여 세계 시민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2021학년도 9평]

공화정체인 국가들은 평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쉽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국가들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평화 연맹에서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고자 하며, 영구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적 체제로 나아가고자 한다.

ㄴ. 평화 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할 것이 아니라, 동료적 관계를 향유한다.

[이성은 도덕적으로 법치글 수립하는 최고 권력의 왕좌를 차지한다. 이성이 전쟁을 탄핵하고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평화 연맹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연맹은 모든 전쟁을 영구히 종식시키고자 한다.

3. 영구 평화를 위해 정치 체제는 공화정으로 변화해야만 한다.

4. 영구 평화는 공고한 평화 조약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평화 연맹의 결성은 영구 평화를 보장한다.

[2022학년도 9평]

영구 평화론 확정 조항 1~3이 제시문.

1. 국제 관계에서는 국가와 국제 기구 등이 행위자로 간주된다.

4. 국가 간 분쟁의 해소가 영원한 평화 실현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5. 정치 체제의 개선은 평화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2022학년도 수능]

국제 사회의 평화는 국제 연맹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국제 연맹은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추구하고,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는 데에만 관여한다.

ㄷ. 이방인이 갖는 현대의 권리는 조건부적으로(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을 때) 보장된다.

[2023학년도 9평]

영구 평화를 위해 상비군은 점차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국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무장 훈련은 사정이 다르다.

ㄴ. 세계 시민법은 외국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다.

[2023학년도 수능]

인간의 이성은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공화제를 향해 노력해야만 하며, 국가들의 평화 연맹이 필요하다.

ㄹ. 전쟁은 영구 평화의 실현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2024학년도 6평]

국제 정치에서 국가들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 평화를 예비해야 한다.

세계 시민법은 평화의 실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ㄹ. 평화 실현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유일한 방도가 아니다.

1. 국내법 : 정치 체제를 공화정으로 전환

2. 세계 시민법에 따른 보편적 우호 관계에 기반

3. 평화 연맹에 근거한 국제법의 질서에 자발적으로 따를 때

[2024학년도 수능]

국제 사회에서 평화 실현은 도덕적 의무이다.

세계 시민법의 이념은 공적인 인권과 영원한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5. 국제 연맹은 주권을 지니지 않기, 독립된 국가처럼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5학년도 6평]

평화 상태는 국가 간의 상호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에 기초해야 한다.

국가 간 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둔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ㄷ. 평화 조약이 강제력을 갖춘다면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2025학년도 9평]

국가 간 제약이 없이는 어떤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평화 연맹이라고 할 수 있다.

5. 비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가 간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

[2025학년도 수능]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떤 공민적 체제에 속해야 한다. 그런 체제에 귀속될 사람들에 관계되는 모든 법률상의 체제는 다음 중 하나이다.

첫째, 한 국가 안에서는 시민법에 따르는 체제이며

둘째, 국가 간 관계에서 국제법에 따르는 체제이고

셋째, 사람이나 국가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서 보편 상태의 시민으로 고려되는 한, 세계 시민법에 따르는 체제이다. 이러한 분류는 영원한 평화 이념에 필연적인 것이다.

1. 시민법 체제는 한 국가의 대내적 정치 제도를 지정한다.

2. 세계 시민법은 이방인의 환대권은 보장하나, 영속적 체류권이 아닌 일시적 방문권을 보장한다.

★★[2026학년도 6평]

평화 연맹은 이 연맹에 참가한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키고자 한다.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영원한 평화로 인도해 갈 이념의 실현 가능성은 분명해질 것이다.

2. 평화 연맹이 많아질수록 영원한 평화에 가까워지지 않는다. 평화연맹은 하나.

★3. 국제법의 이념은 독립적인 국가들 간의 분립을 전제로 한다.

5. 환경 윤리 / 예술 윤리

1. 환경 윤리

인간중심주의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자이며 내재 가치를 가짐(= 도덕적 고려의 대상)

그렇기에 인간을 해치지 말아야 할 직접적인 의무를 지님.

그러나 비인간 존재를 해치지 말아야 할 간접적인 의무를 지님.(=수단적, 도구적 가치)

왜? 스스로의 인간 존엄성을 해치고, 인간의 동정심을 저해하고, 동료 인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2. 예술 윤리

예술을 통한 도덕성 함양 가능.

미 = 도덕적 선의 상징

예술과 도덕은 독립적인 영역이나, 도덕 판단과 미적 판단은 형식적으로 유사함.

예술의 보편성과 도덕 법칙의 보편성은 둘 다 이성의 역할을 요구.

미적 판단	도덕 판단
일종의 보편적 판단 ← 선형성에 근거한 판단 ← 자유를 전제로 한 판단	
주관적 판단에서 시작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판단

기출/EBS 심화 선지

1) 환경 윤리

1. 행위 주체(인간)의 자연적 소질 변화가 동물학대 반대의 도덕적 근거이다.
2. 인간이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비난받을 행위이다.
3. 이익 관심을 갖는 동물은 그 자체로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4. 동물이나 무생물에 대한 고려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5. 산에 있는 광물조차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6. 인간 이외에 존재에게는 도구적 가치가 부여된다.

2) 예술 윤리

1. 미는 이해관계 등의 주관성을 배제해 실재할 수 없다.
2. 예술 작품은 타인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
3. 예술을 통해 감각의 자극에서 도덕적 관심으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4. 우리가 어떤 색을 보며 느끼는 마음은 도덕적 판단과 유비적인 것을 함축한다.
5. 예술에서의 미적 가치는 예술의 형식에서 도출된다.
6. 미와 도덕은 독립된 영역을 갖는다.
7. 미와 선의 형식은 유사성이 있다.
8. 예술의 본질은 예술의 형식 밖에서 찾을 수 없다.
9. 미적 체험을 통한 자유와 도덕적 전제인 자유는 별개의 것이다.

기출 선지

1) 환경 윤리

[2014학년도 6평]

인간은 자연을 고려해야 하는 간접적 의무를 갖는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는 인간의 동정심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 인간을 위해 생태계를 고려할 의무가 있다.
2. 자연 보호는 인간의 도덕성 완성에 기여한다.

[2014학년도 수능]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 대한 의무와 배치된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2015학년도 9평]

이성이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들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그리고 자연 중에 생명이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려는 성향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2015학년도 수능]

우리는 인간 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다른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인간은 다른 존재와 관련한 자기의 의무를 이들 존재에 대한 의무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2016학년도 수능]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둔화시키고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2017학년도 6평]

자연의 피조물이 이성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잔인하게 다루면 안 된다.
그렇게 다룰 경우 고통에 대해 공감을 일으키는 인간의 자연적 소질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ㄴ. 인간을 제외한 자연 안의 이용 가치가 있는 모든 존재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19학년도 6평]

자연 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같이 대지의 산물로서 평범한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도덕적, 실천적 이성의 주체로서 인간은 자연 안에 존엄하며 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2019학년도 9평]

늙은 말이나 개와 같이 오랫동안 봉사한 동물들에게 감사의 정을 표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ㄹ.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2019학년도 수능]

자연 안의 아름다운 대상들에 대한 파괴를 일삼는 것은 도덕성을 크게 촉진하는 감정을 약화시켜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2020학년도 6평]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의무를 지닌다. 인간만이 실천 이성을 지닌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4.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

[2020학년도 수능]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는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그러한 파괴적 성향은 인간의 도덕성에 기여하는 감정을 약화시킨다.

2. 개체에 대한 도덕적 존중은 내재적 가치에 근거한다.

[2021학년도 6평]

도덕적 의무를 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한 의무는 없다.

무론 동물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2022학년도 6평]

인간은 통상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늙은 말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 마저도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ㄱ.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도 도구적, 수단적 가치가 부여된다.

[2022학년도 9평]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ㄷ.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ㄹ.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2022학년도 수능]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동물에 대한 잔인한 폭력은 삼가야 하며,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동물을 부려야 한다.(=도구적 가치, 학대 금지)

ㄴ.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 수단적 가치는 인간의 가치 판단에 의존적.

ㄷ. 쾌고 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다.

- 칸트에게 있어 도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은 쾌고 감수 능력이 아닌, 이성의 여부에 달려 있다.

[2023학년도 6평]

동물은 비록 이성은 없을 지라도 살아 있는 피조물임을 고려할 때,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의무를 거스르는 것이다.

[2023학년도 수능]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의 다른 의무는 갖지 않는다. 인간 이외의 존재와 관련된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된다. 따라서 모든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이다.

ㄱ. 인간에게 있어 동물은 수단적 가치를 지니므로, 경우에 따라 필요 시 동물을 해칠 수 있다.

[2024학년도 6평]

파괴적 정신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대립한다.

ㄹ.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 된다.(인간이라면)

[2024학년도 수능]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면 고통에 대한 공감감이 무너져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매우 유익한 천성적 소질이 고갈될 수 있다.

[2025학년도 6평]

인간 외 생명체를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의무와 진정으로 대립한다.

ㄷ. 생태계 구성원 중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가 될 수 있다.

[2025학년도 9평]

인간은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을 폭력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ㄹ. 자신 이외의 존재에 대한 도덕적 의무 또한 성립한다.

[2025학년도 수능]

이성이 없는 존재자(=동식물)은 단지 수단으로서 상대적 가치만을 갖지만,

모든 이성적 존재자(=인간)들은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2) 예술

[2024학년도 수능]

미적인 것은 윤리적으로 좋은 것의 상징이다. 미적인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며(=보편적 기준) 요구해야 마땅하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쾌락의 단순한 감각적 수용을 넘어선 순화와 고양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그들이 지닌 판단력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1.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은 모두 이해 관심과 무단한 태도를 지닌다.

2. 미적 판단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보편화될 수 있다.

3. 미적 판단의 대상인 예술 또한 그 자체로 도덕적 자율성에 대해 독립적인 자율성을 지닌다.

5. 미적 판단 능력은 도덕 판단 능력에 연관되어 있고, 예술체험을 통한 도덕 판단의 함양이 가능하다.